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윌일	2021. 5. 17.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71호

제출연월일: 2021. 5. 17.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논산시 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4. 2. ~ 2021. 4. 22.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논산시"로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체육진흥협의회" 로 한다.

제2조 중 "협의회"를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를 "논산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논산시체육회장
-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문화체육과?		과장	유	정	태	
입 안 ^처	체	육 팀	! 장	김	재	희
사 	담	당	자	조 (74	명 6-57	5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	논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한조례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제1조(목적)
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u>논산시(이하 "시"라 한다)</u> 에	<u>논산시</u>
두는 <u>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u>	<u>체육진흥협의회</u>
<u>회"라 한다)</u> 의 조직·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업무를 관장한다.	<u> "협의회"라 한다)</u>
1. <u>시</u>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1. <u>논산시</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
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	<u>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u>
내로 구성한다.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교육장이 된다.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	에서 선출한다.
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히 체우지흐스 의하여 허시저ㅇ	나에 체다치느 사라 주에서 노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인사 2인 이상 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논산시체육회장
-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 육장
-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 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 동할 수 있는 사람

붙임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O 해당 없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O 해당 없음
 - 나. 추계결과
 - O 해당 없음
- 3.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유 정 태

참고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5조